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5. 1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9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1999년 5월 18일 제64회(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가. 제정이유

-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서울특별시도의 노선 인정공고와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분리운영에 대비코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재원은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함(안 제2조)
- 기금의 관리·운용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나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의 용도에 한함(안 제4조)
-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영관과 출납원을 둠(안 제5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안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유재한)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와 구도를 구분 분리 운용한다고 하는데 따른 의문점으로 시도로 인정공고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상의 시설물 관리도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물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가 명확치 않으므로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며 만약 시설물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한다면 관리에 따른 모든 예산은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기타 다른 내용은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의 안 번 호	50

제출년월일 : 1999. 4. 2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영등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고 서울특별시도의 노선 인정공고와 관련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분리 운용에 대비코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기금의 재원은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함(안 제2조)
2) 기금의 관리·운용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함(안 제3조)
3)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나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의 용도에 한함(안 제4조)
4) 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둠(안 제5조)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함(안 제6조)
6)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나. 합　　의 : 필요 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조례(안) 별첨
마. 입법예고 : '99. 3. 10 ~ '99. 3. 31(20일간) 특기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은행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변경
3.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